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2000년 7월 1일자(법률제614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 나. 동장에게 위임된 청소위생과 소관 “개장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청소위생과 소관 위임사무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 청소위생과 소관 “매장·화장·개장 등의 신고”중에서 “개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청소위생과에서 처리)

3.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2000년 7월 1일자(법률제614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장에게 위임된 청소위생과 소관 “개장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첫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청소위생과 소관 위임사무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해 등 각종사고의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를 받는 국민과 그 제공자인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이송기관 등의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등 응급의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전문 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기관 순으로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종합병원과 병원 및 의원 중에서 이를 지정토록 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제31조).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의 권한인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

건서기관인 보건소장(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2조)에게 위임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개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청소위생과 소관 “매장·화장·개장 등의 신고”중에서 “개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자는 데에 의견입니다.

매장·화장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창구민원으로 처리되는 사항이지만, 개장 신고는 현지확인 등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 기능이 전환된 현시점에서는 동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구 본청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개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